

# 지회운영규정

제 정: 2008.01.09.  
최근개정: 2019.08.19.(이사회 승인)  
시 행 일: 2019.09.06.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철도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시행세칙 학회 시행세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회의 설치목적은 학회정관 제2조에 의거 철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지회활동(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
2. 학술, 기술발표 및 기술강연회 개최
3. 회원의 자질향상과 기술연마를 위한 현장 견학 및 시찰
4. 현장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좌담회, 간담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5. 회원의 연구장려 및 표창
6. 해당지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제4조 지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회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지회의 조직 및 운영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회장은 지회장의 서면요청에 따라 본 규정 제3조에서 언급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지회에 학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연간 예산은 학회 지원금, 자체 수입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분하고, 학회 지원금은 연초(매년 1월1일)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학회 지원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합이 지회의 연간 최대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회 지원금 연간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2. 회장은 지회별로 동일하게 지회의 연간 최대보유한도와 학회 지원금 연간 최대한도를 정한다. 또한, 회장은 지회장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3. 지회 예산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연말 결산(매년 12월 31일 기준)을 통해 잔액 발생 시에는 차기 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차년도 이월금액은 지회의 연간 최대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금액은 학회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제7조 지회장은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학회의 회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회는 년 1회 이상 학술행사를 개최 하여야 한다.

부칙 (2008.1.9.)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18.)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7.)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8월 19일(이사회 승인) 이다.

제2조 (시행일) 위 개정일(2019.8.19.)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9.6)로부터 시행한다.